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월 15일, 윤재옥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4.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윤재옥)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위험관리 및 기능유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및 성능평가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에게 대행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중의 안전을 위

해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점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의 실시는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평가하거나,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임의적 또는 의무적으로 점검·진단·평가의 대행을 의뢰하게 되는데,

임의적 대행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서 각각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에(제26조제1항),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안전진단전문기관에(제40조제2항)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무적 대행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11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서 각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의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제11조제2항)’과 ‘정밀안전진단(제26조제2항)’을 국토안전관리원·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적 대행 의뢰 대상에 대하여는, 현행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①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②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대행 의뢰를 금지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 규정은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95년(舊)「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정 시 시설물을 시공한 자의 계열회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뢰 금지로 규정된 후, 1996년에는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와 관리주체 소속 또는 자회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뢰 금지로 확대되었고, 2002년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과 유사한 금지규정이 도입되었으며, 2018년에는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도 대행 의뢰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음.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동 금지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 관련 조문에 이를 각각 규정(안 제26조 및 제40조)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등에 대한 정밀안전점검(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 의뢰 금지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점검 외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시설물의 위험요인과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모든 점검·진단·평가의 대행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김선교의원과 윤재옥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내용을 반영함.